

#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89

2022. 3. 22.  
산업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 2022. 3. 10.(김지훈 의원 등 7명)
- 나. 회부일자 : 2022. 3. 11.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3. 22.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불필요한 경쟁제한 문구 일부를 정비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해소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에 관한 문구를 삭제함(안 제4조)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명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합동 추진 중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제설계」 분야에서 검토되어 개선 권고한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과 일부 불필요한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